

인천지방법원 2022. 12. 1 선고 2022가단2615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2. 1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31,301,246원 및 그중 30,449,974원에 대하여 2022. 9. 1.부터 2022. 9. 27.까지는 연 7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2. 3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3.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21. 12. 6. 접수 제16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이호동

별지